

지방세정의 중장기 발전방향

유 태 현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연구2부장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지방세제는 1909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지방비법(地方費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수차례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군정기(美軍政期)에는 일제의 지방세제가 그대로 답습되었다.

독자적인 체제를 갖춘 지방세제의 출범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다음해인 1949년에 「지방세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가능케 되었다. 하지만, 1950년 6·25 동란의 발발은 온전한 지방세제의 정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전후(戰後) 복구기에 접어들어 수차례에 걸쳐 지방세법 개정이 단행되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1961년 지방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¹⁾

1961년 지방세법의 전면개정 이후 최근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세목구조의 변화 및 지방세 세목명칭의 변경을 가져온 지방세법 개정은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추진되었고, 그 이외 소폭의 지방세법 개정은 2006년까지 총 25차례

1) 한재명·유태현, 『한국 지방세제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6.12, p.17.

에 걸쳐 단행되었다²⁾.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구축은 중국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에 해당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세법 제정 이래 오늘날까지 수십 차례에 걸친 개편을 통해 지방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 동안의 지방세제 개편은 대체로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직접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반영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정치행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제 개편의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세법의 제정 및 대폭적인 개정은 주로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 개편에 맞추어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은 국세 체계의 변화에 의해 확충되거나 취약해지게 된 점도 부인할 수 없다.³⁾

둘째, 국세 운영을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그간의 조세체계 개편은 부수적으로 지방세법의 조정을 불러왔고, 이는 지방세의 국세 의존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지방세의 국세의존 심화 경향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세원 분포를 불균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원분포는 매우 불균등하며, 재정력 격차도 큰 상황이다.

셋째, 각 시기별로 운영되었던 지방세의 세목이 매우 많았다.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도 지방세의 세목 수가 16개에 이를 정도이다. 그 동안 많은 지방세 세목이 그 세수(세원)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넷째, 그 동안의 지방세법 개정은 지방세의 주요 세원을 소득탄력성이 낮은 재산관련 세목에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세제는 조세로서의 안정성이 미흡

2) 그 이외 지방세에 영향을 미친 조치로는 농지세징수예관한임시조치법(1964.11.1 시행, 법률 제1662호), 국세부가세 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1966.8.3, 법률 제181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1974.1.14) 등이 있다.

3) 예컨대 1949년 지방세법 제정 당시 세목의 개폐는 주로 국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국한되었고, 1951년의 임시토지취득세법은 농업소득에 대한 세원의 대부분을 국세로 흡수하여 농민소득에 대한 지방세가 전부 폐지되었다. 1958년에는 국세로서 자동차세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관련 부분이 개정되었다. 또한 1961년 지방세법 전면개정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예관한법률」의 제정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단행되었으며, 1976년 지방세법 개정은 국세로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위하여 당시 지방세였던 유흥음식세와 국세였던 등록세를 맞교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였다. 나아가 2005년 지방세법 개정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위하여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부동산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였다.

하고, 자연적인 신장률이 낮아 지방세법의 획기적 개정이 없이는, 늘어나는 지역주민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다섯째, 지방세제를 개편함에 있어 관련된 세무행정 여건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소홀하였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배려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빈번한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세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지방세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이 탄실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지방세법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정 역시 효율적인 틀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세정은 아직 완벽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보고는 우리나라 지방세정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지방세정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설명하였고, 우리나라 지방세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세정의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의 언급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지방세정의 이론적 기반과 당면과제

1.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의 관계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결과 현행 지방세제는 과거와 비교할 때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은 약화된 반면, 재산과세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소득수준의 증대를 초래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소득 및 소비과세 위주의 세제는 세수 신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세제는 재산과세를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신장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거나 지방자치의 구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제(지방세법)의 개선은 그 실행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정이 적절하게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방세정의 여건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세제 개편의 취지는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즉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은 원칙적으로 함께 발전되어야 할 매우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부연하면 실효성 있는 지방세정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세제의 개편을 단행할 경우 그 의도가 바람직해도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튼실한 지방세정은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이끄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세정의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방세제의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해 지방세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지방세제와 세정 모두를 개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요약컨대 우리나라의 지방세제 개편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지방세정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동안 지속적인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세정의 합리화를 이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분야에서 지방세정이 국세행정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원용하고 있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불합리한 요소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2. 지방세정에 관한 이론적 틀

(1) 지방세정의 의의

지방세정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심사청구, 불복 등 지방세제의 운영과정에 나타나는 일체의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정행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정은 지방세제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며, 현행 지방세제의 세부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지방세정은 지방세제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정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해석·적용하여 지방세제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법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세제는 헌법, 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등),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부령) 등), 조례·규칙에 의해 그 내용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지방세정 역시 지방세제를 규율하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지방세정은 헌법과 법률은 물론 기타 법규와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자체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세정을 규율하는 핵심적 법규임을 의미하며,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의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 바람직한 지방세정의 원칙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세제의 합리화는 지방세정의 도움 없이는 이룩될 수 없고, 바람직한 지방세정의 구현은 지방세제가 합리적인 형태를 구축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제가 추구하는 원칙과 지방세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원칙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바람직한 세정(또는 지방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와그너(A. Wagner)는 조세가 이상적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항목, 즉 조세원칙으로 재정정책상의 제원칙(수입충분성, 과세의 신축성), 국민경제상의 원칙(정당한 세원의 선택, 조세작용을 고려한 세종의 선택), 공정의 제원칙(과세부담의 보편성, 과세의 평등성), 세무행정상의 제원칙(과세의 명확성, 납세의 편의성, 최소징세비를 위한 노력)을 지적하였다⁴⁾. 와그너가 제시한 4가지 조세원칙 가운데 세무행정상의 원칙이 세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정원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와그너에 따르면 바람직한 세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세의 명확성, 납세의 편의성, 최소징세비를 위한 노력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과세의 명확성은 부과·징수 등 과세와 관련한 사항을 납세의무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행정이 분명해야 함

4) 차병권, 『재정학개론』, 박영사, 1984, pp.322~326.

을 의미한다. 납세의 편의성은 납세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결정이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징세비를 위한 노력은 세제 운영과 관련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세정을 운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세정원칙은 국세는 물론 지방세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세정을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 과세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납세의무자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납세방법 및 납부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방세정 환경의 변화

2006년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에 이전재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 지방재정의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섬으로써 중앙재정을 능가한 원년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의 위상이 과거보다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는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발전을 결정하는 지방화시대이며, 향후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이 소망하는 지역발전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실한 재정력의 확보가 필수적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견실한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어야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5년부터 민선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 제고와 더불어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향상은 지방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합리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정은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실적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의견수합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방세제의 개편을 단행함에 있어 직접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수렴에 미흡하였다. 또한 지방세정의 여건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제 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적지 않은 부작용도 겪었다.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선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치와 수단의 강구가 시급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아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속도를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예컨대 우편을 통한 지방세부과 업무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납부시기 및 기한을 각종 메일링 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있다.

지역의 위상제고, 주민의식의 향상, 정보화의 진전, 통신수단의 발달 등 지방세정 환경이 크게 변모하였고, 이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방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지방세정을 합리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지방세정의 당면과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세정은 지방세제의 개편과 궤를 같이 하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납세자 편의시책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모색하고 있어 다른 국가에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세정은 과도한 세무행정 비용의 발생, 불합리한 지방세정 관련규정의 존재, 세무조직 및 인력관리체계의 불합리성, 납세자 편의시책의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 과도한 세무행정 비용의 발생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세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세제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은 크게 가시적 비용(可視的 費用)과 비가시적 비용(非可視的 費用)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가시적 비용으로는 징세당국이 부담하는 징세비와 납세자가 조세납부과정에서 지게 되는 납세협력비용(납세순응비용)을 들 수 있다.

징세비는 징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징세비는 세법이 복잡하거나 징세당국의 방만한 행정운영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신고 및 조세상당 등을 위해 납세자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비용이다. 납세협력비용은 신고납세제도와 원천징수제도에서 두드러지게 발생된다. 예컨대 신고납세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5) 유대현, 『재정학』, 상경사, 2006, pp.236~237.

받아 세금납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 한편 원천징수제도는 그 징수의무자에게 징수업무, 관련서류의 정리·보관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제가 간편하고 명확하면 납세협력비용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비가시적 비용은 정확한 크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세제 운영과정에 나타나는 기타의 모든 비용을 가리킨다. 조세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담 이외 민간부문이 지는 초과부담과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도입에 반대하거나 세제개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조세도입 또는 세제개편에 따라 나타내는 불만 등을 말한다.

합리적 세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세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시적 비용과 비가시적 비용을 합한 징세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세정은 세목이 많고 관련 세법이 복잡하여 징세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세 소득할이나 자동차세의 경우 국세와의 연관성 또는 부과·징수절차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체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세목의 경우 그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납세자가 부과 및 징수방식을 정확하게 숙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 그리고 징세관련 비가시적 비용의 축소를 위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보다 합리화하는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2) 불합리한 지방세정 관련 규정의 존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세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지방세법 제1장 총칙편의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총칙 제82조 규정은 그 성격상 지방세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방세정 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정의 합리적인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그 운영주체인 지방세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

다. 다음으로 지방세정을 둘러싼 여건에 해당하는 관련 제도와 법규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지방세정과 관련된 제도 및 법규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편의증진과 지방세무 업무의 효율화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앞의 언급처럼 지방세법 총칙 제82조는 지방세제 내지 지방세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연하면 지방세법 총칙 제82조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국세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제의 독립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세는 국세와 다른 구조 및 성장배경을 갖고 있다. 또한 지방세의 운영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처한 여건이 다르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련한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지방세정의 구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가 국세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위상과 역할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총칙 제82조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동시에 지방세법의 독립적 지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3) 세무조직 및 인력관리체계의 불합리성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물론 기타 지방세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군에 속하고 그 직렬은 세무직렬이다. 현재 지방세무 업무는 이와 같은 세무직 공무원이외에도 같은 행정직군에 속하는 일반행정직렬의 공무원이 맡고 있다.⁶⁾ 2006년 6월 현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11,485명이다.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관리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⁷⁾ 첫째, 국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및 공무원의 수가 적다.

6) 지방세무직을 수행하는 공무원 가운데 세무직 공무원은 지방세무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1993년에 세무직렬이 신설된 이래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7) 이하의 내용은 이영희·김대영,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12, pp.56-59를 인용하였다.

예컨대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세 담당 공무원은 16,071명이지만 지방세 분야 종사 공무원의 수는 10,857명에 불과하다. 한편 중앙부처의 국세 담당 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청 세제실, 국세심판원에 걸쳐 900명 이상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 재정·세제본부에 40명 정도의 공무원이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연구전담 인력은 국세(한국조세연구원 40명 안팎)에 비해 지방세(한국지방행정연구원 3명)가 현격하게 적은 실정이다(국세에 비하여 열악한 조직 및 인력배정).

둘째, 1999년부터 읍·면·동의 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이 담당하던 지방세정 업무가 중단되었다. 그에 따라 재산세나 주민세 법인세할 등 현황과세가 요구되는 세정업무를 시·군·구가 맡게 됨에 따라 과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비합리적인 업무분장).

셋째, 2005년의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재산세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시가조사, 관련 과세자료의 정리 등 새롭게 발생한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자동차세는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토록 개편되면서 관련 업무가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필요한 세무인력의 신규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신규업무의 증가와 소요인력의 공급 장애).

넷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 처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정분야는 과세대상의 관리, 세수추계, 과세고지 등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전산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방세정분야에 별도의 전산담당 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전산전문 인력의 부족)⁸⁾.

(4) 납세자 편의시책의 미흡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 지역공공프로그램의 진행, 지역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여하히 확보하느냐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이

8) 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규정은 세무사시험의 면제조건이나 내용에 있어 지방세분야 종사 공무원보다 국세분야 종사 공무원에게 더 많은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무 공무원이 선망하는 고위직에 해당하는 세정과장(또는 세무과장)의 보직은 일반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세무직의 승진을 장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 담당 공무원보다 지방세무 공무원이 홀대되는 상황과 지방세무직의 승진애로가 초래하는 지방세무 공무원의 사기 침체는 지방세무조직과 인력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세정의 개편내용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중앙단위 교육훈련 인원의 축소 역시 지방세무조직과 인력관리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와 관련하여 그 재원은 지방세를 근간으로 조달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므로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사용상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납세자인 지역주민 또는 지역기업 등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지방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목표로 하는 세수(세입)의 확보와 지방세정의 합리화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 지방세수입의 확보는 지역사업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며,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지방세 납부는 당사자에게 지역발전에 일조했다는 자긍심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조세납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관련 제반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작업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지방세 납부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는 그 본질상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교육 및 홍보 시스템의 운영, 지방세의 전자고지제 시행, 지방세 납부방식의 간소화, 간편한 지방세 세무상담제도의 실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대책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과 유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전시적(展示的)이고 과시적인 조치가 적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보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연계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III. 지방세정의 합리화 방향

1. 과도한 세무행정 비용의 축소

지방세제의 운영은 가시적 비용과 비가시적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가시적 비용에 해

당하는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은 발생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가능한 특징이 있다. 반면 비가시적 비용은 그 실체와 크기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징세비는 세법체계를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할 때 크게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세무과 또는 세정과)과 인력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조치 역시 징세비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의 징세비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목의 수를 줄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방세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세청」(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청」(가칭)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신설하고, 동 기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와 관찰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를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지방세업무 담당 공무원과 납세의무자가 각기 다른 모니터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아 해당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산정과정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 설치·활용,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세액계산 서비스 제공, 자치단체 홈페이지 내 지방세 상담코너 운영, 지방세 분야별 전문상담 담당제도(지방세 상담 도우미제)의 운영,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의 운영(세정민원 현장 처리제), 사이버 지방세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하고 간편한 지방세 세무상담 방식의 확산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에 해당한다⁹⁾.

한편 비가시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체계를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과 불평을 줄이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컨대 지방세제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 그리고 비가시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세목 수를 줄이는 등 지방세제를 단순화하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9)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세정은 보다 투명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납세의무자와 징세당국인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불합리한 지방세정 관련규정의 시정

지방세법 총칙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처리함에 있어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국세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결국 지방세제 내지 지방세법이 완전히 독립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결산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는 1,404,053억이며, 그 가운데 내국세 세수는 1,044,279억(74.4%)이고 지방세 세수는 359,774억(25.6%)이다¹⁰⁾. 이는 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은 높지 않지만 그 절대적 규모가 작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246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함은 물론 재정적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의 합리적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새로운 지방세 세원의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방세제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규율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법의 체계와 내용을 합리화하는 작업도 지방세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아직 온전한 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정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제 내지 지방세법이 견실하고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총칙 제82조 규정은 폐지하는 대신 현행 지방세법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세제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16개 지방세 세목을 축소함으로써 지방세제를 단순화하고,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세 세수의 신장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제의 운영을 규율하는 지방세법이 국세법과는 구분되는 독립적 체계와 내용을 갖추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가칭)과 「지방세징수법」(가칭)을 제정하고, 행정자치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관할하는 「지방세심판원」(가칭)의 발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10)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6.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지방세법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지방세정은 보다 합리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중국적으로 원활한 지방자치의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¹¹⁾.

3. 세무조직 및 인력관리체계의 개선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조직과 인력관리의 체계는 국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합리적 지방세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지방세 관련 조직 및 인력관리 체계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세정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무조직과 인력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첫째, 최근에 단행된 지방세제 개편은 새로운 업무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의 인력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업무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1999년에 단행된 읍·면·동 기능의 시·군·구 이관은 재산세, 주민세 법인세할 등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정확한 과표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방세목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소재한 읍·면·동의 실상을 온전하게 알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시·군·구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의한 재산세 과표평가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읍·면·동의 기능을 1999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단위의 「지방세과표평가원」(가칭)을 신설하여 지방세 과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

11) 효율적 지방세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의 정비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방세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 관련하여 파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읍·면·동의 지방세 과표평가 기능을 다시 부활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모든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특성상 지방세무 및 세정 분야는 전산의존도가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방세무 담당 공무원 가운데 전산분야에 소질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능력을 갖춘 별도의 공무원을 충원하여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조치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246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지방세 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인력배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지방세청」(가칭)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세청」(가칭)을 설립하여 당해 광역지역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면 현재보다 예산과 지방세무 담당 인력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지방세정을 이끄는 것은 결국 지방세무 담당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무 담당 공무원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때 지방세정의 합리화는 물론 지방세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여건은 지방세무 담당 공무원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풍토와는 거리가 있다. 지방세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세 담당 공무원과 대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조치의 강구가 필요하며, 승진에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납세편의의 증진

납세자인 지역주민의 지방세 탈세 등 조세회피는 지방세수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목표로 설정한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방세 납부는 결과적으로 소득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납세자인 지역주민은 납세의무를 수행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충실한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

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여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¹²⁾. 첫째,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어 그들이 납세 과정에서 겪을 불편을 줄여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지방세 납부방식의 간소화와 다양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뱅킹, 폰(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시행과정에 뜻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로 말미암아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여 지방세의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충실히 알리도록 힘써야 한다. 지방세 안내책자(리플릿)의 발간, 지방세정달력의 제작배부, 지방세납부 자동안내(ACS) 서비스 제공,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지방세 주민순회 설명회의 실시 등은 지방세의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유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작 발송,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한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영문고지서 발송, 지역 내 기업체(법인)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설명회의 개최(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직무교육 실시), 대형상가 건물 내 전광판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홍보, 관광안내도 활용 정기분지방세 일정 홍보 등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전자고지 수단을 활용하여 지방세의 납부시기와 체납상황 등을 알리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전자고지의 수단으로는 인터넷, 휴대용단말기(PDA), 휴대전화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시기 홍보, 체납조회, 지방세 미신고분 자동검색 등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자고지는 시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국세분야에 실시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적용범위를 지방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미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Taxpayer Advocate Office)처럼 우리나라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도 그 업무의 성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편의 증진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 이하의 내용은 유태현, 「외국의 납세편의 시책과 시사점」, 『지방세』(통권 9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6.7을 참조하였다.

여섯째, 폭주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민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단위의 종합적·전문적인 지방세 상담센터(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방세정의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납세편의 증진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모방하는 획일적인 납세편의 증진제도를 모색하지 말고 지역실정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납세편의 증진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 글

지방세정은 지방세제 내지 지방세법을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정의 적절한 뒷받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노력보다 그 집행영역에 해당하는 지방세정의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지방세제가 아무리 훌륭한 체제와 내용을 갖추었을지라도 그 시행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정은 지방세제의 개선과 더불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세정의 주요한 개선과제로는 세무행정 비용의 축소, 불합리한 지방세정 관련규정의 시정, 세무조직 및 인력관리의 개선, 납세편의의 증진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과도한 세무행정 비용의 축소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납세협력비용의 축소에 초점을 맞추어 양방향 모니터 설치활용,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세액계산 서비스 제공, 자치단체 홈페이지 내 지방세 상담코너 운영, 지방세 분야별 전문상담 담당제도(지방세 상담도우미제)의 운영,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의 운영(세정민원 현장 처리제), 사이버 지방세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광역단위로 「지방세청」(가칭)을 신설

하여 당해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징세비를 줄이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관계 설정에 근거하여 지방세제(지방세법)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방세제 운영 틀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불합리한 지방세정 관련규정의 시정을 위한 조치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방세법 총칙 제82조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엔 힘써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중기적으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가칭)과 「지방세징수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자치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관할하는 전국단위의 「지방세심판원」(가칭) 설립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현행 지방세 분야의 세무조직과 인력관리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신규업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인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력공급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지방세청」(가칭)을 설립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간소화함으로써 예산과 인력감축을 도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무 담당 공무원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세 담당 공무원과 대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승진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세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분위기의 조성은 지방세정의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 자동이체 납부·인터넷뱅킹·폰(텔레)뱅킹·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의 간소화와 다양화, 전자고지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확대·시행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지방세 납세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전국단위의 원스톱 세무상담 서비스 제도(지방세 종합상담센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세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지방세분야에도 확대·적용해야 하며, 그 방식은 매년 운영성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편의 증진수단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의 처방은 중국적으로 원활한 지방자치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방세정의 환경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신축적인 새로운 대책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

● 참고문헌 ●

- 유태현, 『재정학』, 상경사, 2006.
유태현, 『한국지방재정론』, 상경사, 2003.
유태현, 「외국의 납세편의 시책과 시사점」, 『지방세』 (통권 9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6.7
이영희·김대영,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12,
차병권, 『재정학개론』, 박영사, 1984,
한재명·유태현, 『한국 지방세제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6.12,
행정자치부, 『2005년도 연구발표과제 모음집』 (전국지방세업무연찬회), 2005.1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6.12.

